

20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 대상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제외(추후 실시))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3. 평가 대상 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수행한 업무 전체
4. 평가 방법: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 기준: 운영체계(400점)와 업무성과(600점)로 구분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 결정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 600점 미만

·평가 운영위원회는 평가 대상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평가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함

6. 평가 일정

- 평가 실시: 2023. 3. 6. ~ 2023. 4. 21.(방문 평가일은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 평가 결과(절대점수) 통보: 2023. 4. 말(예정)
-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2023. 5. 중(예정)
※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 검토·심의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최종 평가 결과 및 등급 공표: 2023. 6.(예정)

7.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 자료 제출(별첨 참조)

- 제출 기한: 3월 3일(금)
-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 자료 제출 양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요망
※ K2B 미 가입 기관은 기관 내 평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관리자로 회원가입(별첨 참조)
 -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여부(+10)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10)에 따라 점수(가점) 부여

8. 기타 문의: 기관 평가 담당자(052-7030-103, 108 / 02-6924-8854, 8859)

2023년 2월 16일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 단